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8 호
2017년1월11일(수)

여 수 시 보

시 정 방 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7-1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7-83호 보상계획 열람공고(문수~웅천 연결도로공사) /3
- 여수시 공고 제2017-86호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

회 관								
--------	--	--	--	--	--	--	--	--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웅천~문수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11.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웅천~문수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사 업 량 : L=94.5m B=14~15m

2. 열람공고기간 : 2016. 1. 11. ~ 1. 25. (14일간)

3.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여수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 시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여수시 홈페이지 주소 : www.yeosu.go.kr게재

4.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7.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63)로 문의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웅천 연결도로공사 편입 토지 조서

가격시점 : 2017.

작성자 : 행정9급 박규연

연 번	토지소재 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 목	실 제 이 용 상 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 재 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	문 수 동	793	1,027	793-25	420	답	답	여수시 문수동 74*	우*인			
2	문 수 동	795	279	795-4	220	답	답	여수시 학동 10-1*	강*자	여수*일신 융협동조합	여수시 통제영*길 8-17(교동)	근저당
										여수*일신 융협동조합	여수시 통제영*길 8-17(교동)	지상권
3	문 수 동	산13 8-6	1,289	산13 8-13	771	임 야	임 야	여수시 문수동 86*	서*규			
4	문 수 동	산13 8-8	660	산13 8-14	174	임 야	임 야	여수시 여서동 48*-1 현대아파트 10*동904호	양*숙	여수*업협 동조합	여수시 좌수영로 3*5(문수동)	근저당
										여수*업협 동조합	여수시 좌수영로 3*5(문수동)	지상권

의견서

□ 사업명 : 『문수~응천 연결도로공사』

1. 소재지 지 번			
2. 의견서 제출인	주 소	(전화)	
	성 명	생년월일	
3. 의견내용			
2017년 월 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의견 제출인 주 소 :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생년월일 :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성 명 : (서명) </div>			
여수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공 고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도시 개발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이·통장 임명 규칙 개정
 - 읍면 지역 택지 개발·공동주택 입주(개발위원회 미설치 리 발생)
 - 주민 다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총회 추천으로 개정
- 이·통장 임명 관련 책임자 선정을 위한 추천 방법 개선
- 결격사유 및 해임 관련 조항 명확화

2. 주요내용

- 이장 임명 추천자 변경
 - (현행) 리 개발위원회 → (개정) 주민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회의
- 이·통장 추천 방법 변경
 - (현행) 단수추천 → (개정) 복수추천(2명 이상)
 - 1명 이하 추천의 경우 책임자를 읍장·면장·동장이 직권 임명

○ 임명 전 보고 등 규정 신설

- 임명 경위 등을 시장에게 보고 후 임명 여부 결정
-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사람, 표창·감사패·상장 등 수여 경력이 있는 사람 우선 임명

○ 결격사유 및 해임 관련 조항 명확화

- 이·통장 결격사유 조항 신설
-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자질이 부족할 경우 해임 가능 조항 추가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2017. 1. 11. ~ 1. 31.(20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월 3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번호 061-659-5807)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주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총무과) (59675)
- 업무담당자 : 총무과 정승환(rokhwon@korea.kr)
- 문의전화 : 061-659-3106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이장·통장은 해당 리·통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주민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 활동력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리·통의 경우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통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4조(이장·통장의 임명) ① 읍장·면장·동장은 이·통장의 신규 임명 및 그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재직 중인 이장·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각 호에 따라 이장·통장이 해임된 경우 및 리·통이 신설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은 주민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주민총회 등”이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 1명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한다. 이 때 주민총회 등이 3명 이상을 추천한 경우에는 연임 이장·통장(임명 예정인 이장·통장 직전의 이장·통장으로서 연속하여 2회 이상 이장·통장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 중 1명을 임명하며, 1명을 추천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읍장·면장·동장이 해당 리·통에 주민총회 등의 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리·통에 거주하는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읍장·면장·동장에게 임명을 신청한 사람 중 1명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한다. 이 때 임명을 신청한 사람이 1명인 경우에는 추가로 연임 이장·통장의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신청한 사람 중 1명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 읍장·면장·동장은 책임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⑥ 읍장·면장·동장은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장·통장을 임명하는 경우 임명 경위 등을 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제2조에 따른 요건 및 적합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임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사람, 표창·감사패·상장 등을 수여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리·통 지역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선 임명할 수 있다.

⑦ 이장·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 한다.

제5조(반장의 임명)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의 추천을 받아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반장으로 임명한다.

제6조(해임)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문제로 이장·통장·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된 경우
4. 임기 중 사망하거나 해당 리·통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5.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6. 이장·통장·반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 추진 능력이 떨어진다고 읍장·면장·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이장·통장·반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읍장·면장·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보고) 읍장·면장·동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한다.

제8조(임기) ① 이장·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임 이장·통장이 이장·통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해임 후 새로 임명된 이장·통장·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호

임 명 장

주 소 : 여수시 ○○읍면동 ○○○번지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귀하를 여수시 ○○읍·면·동 ○○이장·통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읍·면·동장

